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 의약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46호
- 나. 제출자 : 정재동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2. 제안이유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경감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소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1) 평 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라.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마.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의료급여법」 제9조

5. 검토의견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아과 의사부족으로 소아과 1차 진료
기관의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소아청소년
과학회 조사결과 2023년 8월 기준으로 소아과 개원의 수는
1만 2,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의
1만 6,000명에 비해 26% 감소한 수치입니다.
-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 소아 환자들은 응급실로 몰리고 있
습니다. 실제로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소아 환자의 응급실
이용률은 2010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소아과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본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협약 체결으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인 최소 운영시간이 길어 전문의 1명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지정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공동 협약·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고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지정사항 준수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감독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개원의 감소 등으로 소아청소년의 진료접근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소아청소년과 의원 대기 및 진료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나,
- 현재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총 11개소로 2023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우리아이 안심의원」 사업 지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의약과에서는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대상으로 지속적인 독려를 해왔으나 기 지정된 1개소 외에 지정을 요청하는 곳은 없는 실정임.
-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 감소 시대에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야간·휴일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정책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운영 현황

구 분	종 별	운영시간	지정현황	지원금	비고
서울시	1차 소아청소년과 의원	평일 21시 또는 22시까지	금천구 포함 8개소 (8개구)	시간당 10만원 (*24년부터 시간당 20만원 지원)	'24년부터 시구비(1:1) 매칭 시간당 20만원 지원 예정 (*24년 구비 예산 편성 완료)
강남구	1차 의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평일 18~22시, 휴일 9~13시	강남구 내 5개소	소아청소년과 진료 건당 35,000원	월평균 1개소당 약3,000만원 지원
금천구	1차 소아청소년과 의원	평일 19~22시, 토요일 14~18시, 공휴일 9~13시		시간당 20만원 (지원 예정)	

○ 2024년 소요예산 추계 (242,600천원)

시간당 200,000원	평일(3시간)	토요일(4시간)	공휴일(4시간)	합계
1월	22	4	5	31
2월	19	3	7	29
3월	20	5	6	31
4월	21	4	5	30
5월	21	4	6	31
6월	19	5	6	30
7월	23	4	4	31
8월	21	5	5	31
9월	18	4	8	30
10월	21	4	6	31
11월	21	5	4	30
12월	21	4	5	30
총계	247	51	67	365
총금액	₩148,200,000	₩40,800,000	₩53,600,000	₩242,600,000

플러스 추가금액	₩49,400,000	₩40,800,000	₩53,600,000	₩143,800,000
* 플러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서울시 우리아이안심의원 지정받을 때 21시 or 22시 중 21시로 지정 받은 것으로 서울시에 10시로 추가 연장 가능한지 확인 후 시:구비 1:1 매칭하면 평일 추가금액 구비 24,700,000원 소요됨.				
* 2024년 예산편성(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시:구비=1:1 매칭 시비 : 49,400천원, 구비 : 49,400천원, 총 예산 : 98,800천원 편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6. 2. 3., 2021. 8. 17., 2022. 6. 10.>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다.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 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의료급여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7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3.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설치되거나, 개설·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2.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기관”이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